

의안번호	2216150
의 퇴 인	정동만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 계 번호	26A0290

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의 중소기업 경영실태 등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3,900만원, 2031년 3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9,500만원(연평균 3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6조)	39	39	39	39	39	195	39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국제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국제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, 국제화 장애요인 및 국내 경제 기여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9조(중소기업 국제화 동향의 분석·공표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 동향을 분석·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2조(환경변화 동향 파악 등)	○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관련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제화와 관련한 대외환경 변화 발생에 대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음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융자·보증 및 긴급 물류·통관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5	안 제13조(국제화 지원 시책 수립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화를 영위하거나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특수성 － 2.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른 수출 단계 － 3. 국내 경제 기여효과 － 4. 기타 국제화 지원을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른 수출 단계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
6	안 제14조(수출전략 수립 지원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가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15조(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으로의 전환이나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과의 산업·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6조(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.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2.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3.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및 물류 지원 4.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육성 5. 그 밖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9	안 제17조(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1. 외국의 산업·안전 등에 관한 인증 또는 규격 획득 2. 공급망 관련 규제 대응 3. 외국의 표시 규제 준수 4. 그 밖에 해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립을 주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진하는 산업단지의 조성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제1항 각 호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－ 2. 해외규격의 확보·보급 － 3.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
10	안 제18조(통관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－ 1. 수출입 물품의 신고 및 검사 관련 절차 지원 － 2. 수출입 통관에 관한 전문가 자문 지원 － 3. 그 밖에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재량규정
11	안 제19조(물류 및 유통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－ 1. 수출 물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·운영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－ 2.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거점 또는 제31조에 따른 해외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 해외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－ 3.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·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－ 4.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물류 및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업	재량규정
12	안 제20조(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자 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－ 2.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－ 3.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3	안 제21조(해외진출 사전준비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－ 1.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용자 및 투자 등의 지원 － 2.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컨설팅 － 3.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·번역 지원 － 4.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－ 5.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·허가 지원 － 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14	안 제22조(현지화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－ 1. 해외 현지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－ 2. 해외 현지 투자 유치 지원 － 3. 현지 법률·세무·회계·노무 지원 － 4. 해외 현지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－ 5.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, 영업소, 지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15	안 제23조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기업(이하 ‘대기업’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대·중소기업 간 협력 － 2. 대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시 중소기업의 동반 참여 － 3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및 현지법인 공동 설립 － 4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외 현지 공동물류 및 사후관리망 구축 지원 － 5.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국제화 추진 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한 대기업에 대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이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6	안 제25조(해외판로 지원사업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·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－ 2.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·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－ 3. 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및 운영에 관한 사업 - 4.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및 해외 마케팅·홍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- 5.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- 6.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진출 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- 7.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통·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- 8.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	
17	안 제26조(외국정부 등과의 협력)	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·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발굴·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8	안 제27조(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)	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과의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(이하 “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(이하 “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 - 1.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- 2.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관리, 점검 및 개선 사항 발굴 - 3.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- 4.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- 5. 그 밖에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9	안 제28조(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국제화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－ 1. 공동상표 개발 비용 － 2.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 자금 － 3.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－ 4.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－ 5.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－ 6.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20	안 제29조(시장별 특화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시장별 특성 및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－ 1.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국제화 촉진 기반 조성 － 2. 해외시장별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화 촉진 － 3. 그 밖에 해외시장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의무규정
21	안 제30조(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에 지원거점(이하 “해외진출 지원거점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, 무역보험, 수출입금융, 기술·품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2	안 제31조(민·관 협력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, 시설 또는 조직, 기업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－ 1. 「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 － 2.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, 시설 또는 조직 － 3. 국내외 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민간단체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3	안 제32조(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4	안 제33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“지원 전담기관”)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지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－ 1.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－ 2.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, 해외 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·상담·컨설팅 － 3. 기술·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·향상을 위한 지원 － 4. 해외 공공조달 정보의 제공 － 5.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상담·컨설팅 지원 － 6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－ 7.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제화 동향의 분석 － 8.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분석 － 9.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국제화 촉진 지원 － 10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○ 국가는 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
25	안 제34조(교육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국제화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발 － 2. 법제도, 금융 등 해외시장 관련 교육과정 운영 － 3. 국제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－ 4. 그 밖에 국제화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 재량규정
26	안 제35조(재정 및 금융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출연·보조·융자·투자·보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－ 2.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용자 - 3.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- 4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용자 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○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국제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-	○ 미대상: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, 제정안에 따른 추가제정 소요는 없다는 입장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	—
3	안 제9조(중소기업 국제화 동향의 분석·공표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- 안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국제화 동향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 재정지출 발생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
4	안 제12조(환경변화 동향 파악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5	안 제13조(국제화 지원시책 수립)	X	-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수출전략 수립 지원,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, 해외판로 개척 지원, 해외진출 사전준비 지원
6	안 제14조(수출전략 수립 지원)	X	현지화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7	안 제15조(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)	X	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
8	안 제16조(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)	X	
9	안 제17조(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)	X	
10	안 제18조(통관 지원)	X	
11	안 제19조(물류 및 유통 지원)	X	
12	안 제20조(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등)	X	
13	안 제21조(해외진출 사전준비 지원)	X	
14	안 제22조(현지화 지원)	X	
15	안 제23조(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)	X	
16	안 제25조(해외판로 지원사업)	X	
17	안 제26조(외국정부 등과의 협력)	X	
18	안 제27조(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)	X	
19	안 제28조(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)	X	
20	안 제29조(시장별 특화지원)	X	
21	안 제30조(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)	X	
22	안 제31조(민·관 협력)	X	
23	안 제32조(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)	X	
24	안 제33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X	
25	안 제34조(교육 지원)	X	
26	안 제35조(재정 및 금융지원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 현황(중소벤처기업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세부사업명-내역명	회계·기금	2026 예산	비고 (제정안 관련 규정)
1	수출지원기반활용 - 수출바우처	일반회계	150,203	안 제14조(수출전략 수립 지원), 제15조(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), 제17조(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) 등
2	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-글로벌소상공인(K-소상공인) 육성	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	9,520	안 제15조(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), 제25조(해외판로 지원사업)
3	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-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	일반회계	35,609	안 제16조(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), 제19조(물류 및 유통 지원) 등
4	온라인수출플랫폼(정보화) -온라인수출플랫폼(정보화)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3,382	안 제16조(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), 제19조(물류 및 유통 지원),
5	온라인수출플랫폼(정보화) -클라우드전환(정보화)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892	제25조(해외판로 지원사업) 등
6	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-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	일반회계	17,519	안 제17조(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)
7	글로벌화지원플랫폼 -스마트트레이드허브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7,118	안 제19조(물류 및 유통 지원)

연번	세부사업명-내역명	회계·기금	2026 예산	비고 (제정안 관련 규정)
8	마케팅지원사업 -판로진출지원 (마케팅역량지원)	일반회계	1,500	안 제20조(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등), 제28조(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)
9	글로벌화지원플랫폼 -글로벌비즈니스센터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17,693	안 제21조(해외진출 사전준비 지원), 제22조(현지화 지원), 제25조(해외 판로 지원사업), 제29조(시장별 특화지원) 등
10	글로벌화지원플랫폼 -코리아스타트업센터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13,896	
11	글로벌화지원플랫폼 -글로벌베이스캠프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700	안 제21조(해외진출 사전준비 지원), 제22조(현지화 지원), 제25조(해외 판로 지원사업), 제30조(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) 등
12	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- 대중소기업동반진출	일반회계	16,851	안 제23조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)
13	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-수출컨소시엄	일반회계	19,839	
14	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-글로벌스타트업육성	일반회계	23,325	안 제25조(해외판로 지원사업)
15	마케팅지원사업 -K-뷰티클러스터	일반회계	3,000	
16	글로벌협력기반구축 -글로벌협력기반구축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1,890	
17	중소벤처분야 다자협력촉진	일반회계	365	안 제26조(외국정부 등과의 협력)
18	기술혁신기반조성-ASEIC 운영	일반회계	1,575	

연번	세부사업명-내역명	회계·기금	2026 예산	비고 (제정안 관련 규정)
19	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-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	일반회계	2,021	안 제27조(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)
20	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-콜롬비아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·운영	일반회계	1,852	
21	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-콜롬비아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	일반회계	2,030	
22	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-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용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플랫폼 구축 사업	일반회계	3,079	
23	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-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엑셀러레이팅	일반회계	707	
24	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-베트남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실증 데모센터 구축 및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	일반회계	600	안 제30조(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), 제31조(민·관 협력)
25	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-수출지원센터운영 (수출지원센터운영)	일반회계	3,754	
26	신시장진출지원자금(융자) -내수기업수출기업화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100,000	
27	신시장진출지원자금(융자) -수출기업글로벌화	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	216,378	안 제35조(재정 및 금융 지원)

자료: 중소기업벤처업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, 본 추계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실태, 국제화 장애요인 등 실태조사(안 제6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중소기업 경영실태, 국제화 장애요인 등 실태조사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국제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실태, 국제화 장애요인 및 국내 경제 기여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3,900만원으로 추계됨
 - －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“중소기업 수출경기실사지수(BSI) 도입(2025년, 6,600만원)”, “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中企 설문조사(2025년, 1,200만원)” 등이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실태, 국제화 장애요인 및 국내 경제 기여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억 9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중소기업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6조)	39	39	39	39	39	195	3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